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67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1. 3.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2,088,000천원(국비 1,160,000, 지방비 928,000)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비고
도	270,000천원	150,000천원	120,000천원	
제주시	1,620,000천원	900,000천원	720,000천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비 포함
서귀포시	198,000천원	110,000천원	88,000천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비 포함

3. 지원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설치비용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의 저녹스버너 #붙임8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제8장 우선 적용함

• 지원조건 및 범위,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검사 및 확인 등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포함 (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 설비 용량별 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은 여유율을 제외한 설계풍량(m³/min) 기준임

4. 지원금액 : 보조금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50%, 지방비40%), VAT 제외

- 방지사설 종류·용량별 산정되는 보조금 및 사물인터넷 설치 보조금 #붙임1 참고
- 지원 제외
 - 기존 방지사설비, 덕트 등 일체 철거비
 - 방지사설비 안치를 위한 철 구조물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설치비
 - 기존 덕트공 외의 덕트 설치를 위한 벽체 타공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사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사설	가스상물질 방지사설		조합 및 공동방지사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사설 3.6억원

※ 공동방지사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한함)

나.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사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사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 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다.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상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6. 방지시설 설치 사업참여 기준 및 지원 사업장 선정(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 의뢰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붙임 2 참고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나. 지원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관청(심사위원회)은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격업체 승인 후 개별 통보

7. 신청기간 : 2021. 1. 26. ~ 2021 . 3. 5.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서를 발급받은 관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21 .3.5.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9. 주요 구비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 3

가. 반드시 첨부서류 확인하여 순서대로 편철 및 인덱스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및 보완요청 서류 미비 시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나. 전자파일은 USB로 제출

1.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붙임3-1)

1-1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2 최근3년간 시공실적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도면

설계도 작성 시 (Auto Cad로 작성)하며 물량산출서의 모든 산출 근거는 제출한 Auto Cad 파일에서 실측수치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도면에서 확인 불가 시 보조금 지원 제외

2.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설계내역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2 준수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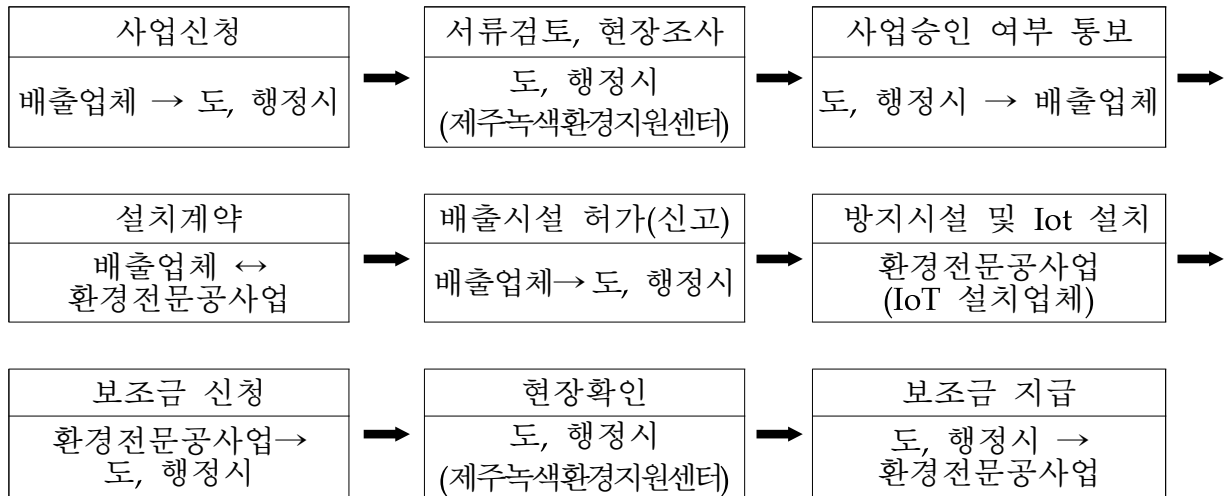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6.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환산표 1부(공고문 엑셀파일 #붙임3-3 준수해 작성)
7. 사업장 위치도 1부. (붙#임3-4)
8.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3-5)
10. 자체 평가표 및 신청사업장 기초 현황 1부(#붙임3-6)
11. 견적서 1부

10.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착공시기 및 착공신고서 : 지원대상자 선정 승인 통지 후 15일 이내 착공(#붙임5)
- 준공 조건 및 준공신고서(#붙임6)
 - 제출된 서류대로 제작·설치, 운영 될 것 (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보조금 제외)
 -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자가측정 기록 제출)
 - 방지시설 설계 배출량(표준상태)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량(표준상태)이 설계풍량 대비 80%이상 배출되어야 함
 - ※배출가스량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가측정 기록 제출하여야함(미제출시 준공대상에서 제외)
 - ※준공에 따른 현장심사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입회하여 완공시설 설명 등 현장안내 필요

11. 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자체 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

- 사업장여건, 오염물질량,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을 평가 #붙임4 참조

12. 사업비 집행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완료 후 지급

가.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7)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 위임장(#붙임7-1) 제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나. 다음의 ①, ②,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③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④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7-2)

13.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1 . 1.26. ~ 3. 5. 18:00

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1 . 3월 중 개별 통지

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사업 담당자 (☎064-710-4112)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사업 담당자 (☎064-728-3133)

-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사업 담당자 (☎064-760-2922)

《지원안내 및 서식》

· 신청서 서식은 도, 행정시 홈페이지(고시/공고)나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www.jeu.go.kr: 분야별정보 →환경 →알림마당<#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